

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2. 제출및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1998년 3월 6일
- 회부일자 : 1998년 3월 6일

## 3. 제정이유

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이 개정(대통령령제15271호, '97.2.6)됨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함.

## 4. 주요골자

-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광고물에 대하여 광고물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기간 종료일을 광고주에게 미리 알려 연장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함.
- 광고물의 제작,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표기가 어려운 실명제 제외 대상 광고물을 구체적으로 정함.
- 공중에 띄우는 에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주민의 안전과 도시 경관을 고려하여 1km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함.
- 공공이용 광고물중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 방법을 비영리 목적에 한하여 시설물 기능 및 도시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하도록 함.
-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, 징수를 위하여 기준을 세분화하였음.

## 5. 검토의견

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

- 광고물 표시기간 종료일 등을 행정기관에서 미리 알려 광고주(민원인)의 기간 연장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,

- 광고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실명제 제외 광고물을 구체적으로 정하며,
-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에 대하여 공공성과 도시경관을 저해받지 않게 설치하여 상업 광고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
- 수수료 부과, 징수 기준을 세분화 한 것이 주 내용임.

당 조례안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행정기관 편익위주에서 민본 행정으로 전환하는 내용과 비규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혼동이 없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취지 및 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